

# 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연장 공고

「제주특별자치도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10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관련 규정 준수에 적극적인 기업을 선정 및 지원하기 위한 <2025년 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> 신청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.

2025년 4월 일

제주특별자치도지사

## 1. 신청자격

- 공고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 소재(본사 또는 주사업장)한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중소기업

### < 보조금 지원 부적격 단체 >

-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
-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하는 단체
-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(사회보장적 시설단체 제외)

## 2. 개요

연번	사업명	지원규모	사업추진 기간	접수·문의처
1	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	총 5개소, 23,000천원	보조금 교부결정일 ~ 2025. 11. 30.	안전정책과 (710-2564)

- 지원형태: 민간자본사업보조
  - 지원액: 1개소당 4,600천원 \*: 보조금 100%
  - 지원내용
    - 시설개선: 노후 작업장, 휴게공간, 화장실 개·보수 등
    - 안전장비: 보호구, 측정장비, 구조장비 구입 등
    - 근로여건 개선: 냉장고, 냉온풍기, 정수기 등 휴게시설 비품 구입
- ※ 노동환경개선 분야와 관련이 없거나 운영비(임차료, 단순 소모품 구입 등) 지원 불가

### 3. 신청 및 접수

가. 신청기간: 2025. 2. 4.(화) ~ 5. 30.(금)

나. 신청방법: 방문 또는 등기우편(마감일 18:00 도착분까지 유효)

[주소: (우 63122)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(연동), 제주특별자치도청 안전정책과  
'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 담당자' 앞]

다. 신청서류[서식 1]

- 1)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부.
- 2) 사업계획서 1부.
- 3) 단체(기업)소개서 1부.
- 4)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.
- 5)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('24.12월분) 1부. \* 국세청홈택스 다운로드
- 6)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.
- 7) 중소기업 확인서 1부. \*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다운로드
- 8)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 1부.
- 9)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 1부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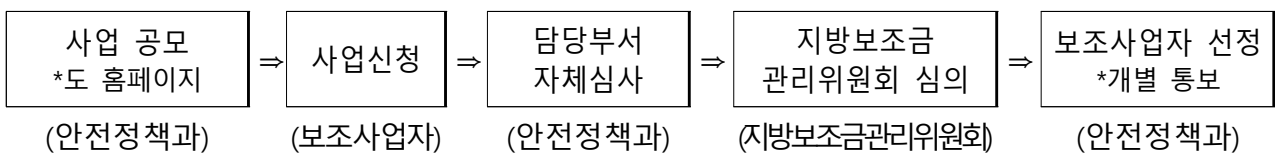
라. 평가자료

- 10) '24년 자체 안전관리계획 사본 및 이행 증빙자료 1부[참조]
- 11) '24년 위험성평가 자료 사본 및 개선 자료 1부
- 12) '24년 안전보건교육 결과 자료  
\* 근로자 정기안전교육의 경우 상·하반기 중 택 1  
\* 관리감독자 등의 경우 교육 이수증 등
- 13) '24년 근로자 건강검진 이수 증빙자료 1부
- 14) 최근 3년 내 산재요양승인/반려여부 확인서 1부  
\* 근로복지공단 고용·산재보험 토탈서비스
- 15) 최근 3년 내( '22~24년) 안전보건 개선활동 우수사례 1부
- 16) 안전보건관련 국가자격증 사본 1부

### 4. 지원사업 심사 및 통보

○ 심사방법

(1차) 관련전문가 심사위원회 심사 → (2차) 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·결정



※ 사업자 선정 이후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(보택e) 활용(<https://www.losims.go.kr/sp>)

## < 유 의 사 항 >

### 1. 지방보조금 교부신청[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후]

- 교부신청서 제출(신청자 명칭, 주소, 보조사업 목적과 내용, 보조사업 총경비 및 교부신청 금액, 자부담액, 보조사업기간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사업계획서 제출(사업개요,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, 보조사업 수행 계획, 교부신청 금액과 그 산출기초, 소요경비 사용방법 및 보조금 이외 자부담하는 금액 및 방법, 보조사업 효과, 보조사업에 따른 수입금액 처리, 기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사항)
- 보조금 전용통장(계좌) 등 사본 제출 : 별도 계정으로 1개 사업에 1개 통장 별도 개설
- 청렴이행서약서 작성·제출 의무화 및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제출

### 2. 보조사업의 수행

- 보조금의 용도와 사용금지
-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
- 사업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보고하여야 함
-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현지 조사를 할 수 있음
-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

### 3.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

- 보조사업자는 사업 완료 또는 폐지 승인,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
- 기 교부된 보조금과 이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사업확정 금액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반환 조치
-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 기록 및 반기별 보고
-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받아야 함
- 지방보조금 총액이 10억 이상인 특정보조사업자는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 제출

### 4.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

- 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하거나 법령 등을 위반 한 경우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
-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 다른 보조금 교부제한
-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부과
- 법령, 지방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등에 위반하여 다른 용도 사용한 경우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
- 기타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는 지방보조금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름

### 5. 기타사항

-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
- 심의위원회에서 자료나 참석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함
-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
- 기타 본 공고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,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규정에 의하고, 기타사항은 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함
- 궁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안전정책과(☎064-710-2564)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

# 사업계획서

사업개요

- 사업명 :
- 사업기간 :
- 사업내용 :

- 경비총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(보조율            %)
- 보조금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- 자부담액 :            천원

보조사업 수행계획 (단위 : 천원)

추진시기	세부 사업내용	비고
	<b>사업비가 투입되는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작성</b>	

보조사업의 효과

- 
-

□ 사업비 집행계획

※ 산출내역이 불분명할 경우 심의제외

가. 지방보조금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<작성예시> 작업환경 개선 물품구입	재료비	1,000	· 공기청정기 500천원×2개 = 1,000천원 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나. 자부담 집행계획(구체적으로 작성)

①사업내용(단위사업명)	②예산비목	③금액(천원)	④산출내역(기초)
계			
<작성예시> 작업환경 개선 물품구입	재료비	1,000	· 공기청정기 500천원×2개 = 1,000천원  ※1식*10,000천원 = 10,000천원(X) → 1식과 같이 산출기초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없는 표현 금지

<작성요령>

- ① 사업내용 : 단위(세부)사업명을 기재
- ② 예산비목 : 홍보비, 인쇄비, 강사료, 교통비, 식비, 임차료 등으로 구분
- ③ 금 액 : 천원 단위로 작성(산출기초의 원단위 절상)
- ④ 산출내역(기초) :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
  - 세목 기재방법 : 단가(원)×회(명, 부 등) = ○ ○ ○ 천원
  - 산출내역(기초)작성이 어려울 경우 유사견적서 등 보조설명자료 첨부

# 단 체(기 업) 소 개 서

[ 단체명 : \_\_\_\_\_ ]

주소 및 연 락 처	주 소	(우 123-45)		
	연 락 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전화 :</li> <li>• 팩스 :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홈페이지 :</li> <li>• E-Mail :</li> </ul>	
등록 및 인력현황	등록기관		등 록 일	
	대 표 자	(공동대표인 경우 모두기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무국 직원수 : 명</li> <li>(사무국장, 행정부장, ..)</li> </ul>	
	상시근로자 수			
설립목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우리 사회의 ○○○○와 균형있는 ○○○○을 실현하기 위한 ○○○○을 전개함으로써 ○○○○○○ 기틀 마련</li> <li>※ 첨부 :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사본 1부</li> </ul>			
단체연혁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'81.11. 8 ○○○○ 설립(창립)</li> <li>• '88. 6.15 ○○○○ 사단법인 설립허가</li> <li>• '99. 7.20 제주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</li> </ul>			
예산현황 (당해년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예산총액 :      천원(보조금 :      천원, 자체수입 :      천원)</li> <li>• 자원구성(100%) : 회비수입( %), 기부금 및 모금활동( %),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( %), 사업수익( %), 기타( %)</li> </ul>			
주요사업 (최근1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“정관/회칙상에 근거하여 추진하는 주요사업 기재”</li> <li>• 2~3건 작성</li> <li>• 별지작성 가능</li> </ul>			
주요사업 계 획 (당해년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2~3건 작성</li> <li>• 별지작성 가능</li> <li>•</li> </ul>			



## 안전·보건 확보의무 준수 서약서

본인은 귀 기관의 「안전보건 우수기업 인센티브 지원사업」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「산업안전보건법, 중대재해처벌법」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.

: 예 ( )

: 아니오 ( )

○○○(업체명)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,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안전·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.

2025년 월 일

주 소 :

기 관 명 :

대 표 자 : (서명 또는 인)

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

## 참조

## 안전관리계획[예시]

※ 사업의 특성에 따라 서식 변경 가능 하며 추진실적의 경우 증빙자료 포함 제출

### 1 사업장 개요

회사명	(주) 제주안전	대표자	안전한			
소재지 (연락처)	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○○○○					
최근 3년간 재해현황	2022년		2023년		2024년	
	재해자수	사망자수	재해자수	사망자수	재해자수	사망자수
	-	-	-	-	-	-

### 2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

□ 안전보건 전문인력 등 배치표 및 담당업무

직책	성명	담당업무	비고
안전 관리자 (산안법 제17조)	○○○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·보건에 관한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해당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</li><li>2.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<li>3.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<li>4.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<li>5. 사업장 순회점검, 지도 및 조치 건의</li><li>6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·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<li>7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<li>8. 법 또는 법에 다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<li>9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</li><li>10.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농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</li></ol>	

직 책	성 명	담당업무	비 고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보건 관리자 (산안법 제18조)</p>	○○○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·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</li> <li>2. 안전인증대상 기계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 등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3.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4.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5.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직의 직무</li> <li>6.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이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7.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,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, 부상·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,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, 위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에 한함)</li> <li>8.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9. 사업장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의 건의</li> <li>10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11. 산업재해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12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13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</li> <li>14.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</li> </ol>	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안전보건 관리 담당자 (산안법 제19조)</p>	○○○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안전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2.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3. 작업환경측정 및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4. 건강진단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5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, 산업재해 통계의 기록 및 유지를 위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li>6. 산업안전·보건과 관련된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·조언</li> </ol>	

## □ 조직도

<b>대표이사( 안전한 )</b>		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감소계획 추진 종결</li> <li>◆ 방침, 목표 수립, 공표</li> <li>◆ 현장 안전보건점검</li> <li>◆ 안전보건교육 참석</li> </ul>		
<b>현장 PM( 정직한 )</b>	<b>총무팀장( 꼼꼼한 )</b>	<b>안전담당( 철저한 )</b>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담당 현장 점검지원</li> <li>◆ 담당 현장 교육지원</li> <li>◆ 담당 현장 점검사항 개선여부 확인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안전관리비 예산 지원</li> <li>◆ 우수협력업체 포상</li> <li>◆ 외부기관 선정 지원 등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◆ 감소계획 이행 관리</li> <li>◆ 교육교재 및 교안 개발</li> <li>◆ 현장 점검 지원</li> <li>◆ 점검 개선여부 확인</li> <li>◆ 산업재해 관리 등</li> </ul>

## 3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및 실적

### □ 안전보건 세부추진 계획 및 실적

목표/세부계획	추진일정				목표	예산 (만원)	달성률 (%)	실적/부진사유
	1 분기	2 분기	3 분기	4 분기				
정기 위험성평가	계획			○	1회/년 이상	200	100	24. 10.완료
	실적			○				
수시 위험성평가	계획	○	○	○	수시	-	-	
	실적							
고위험 개선	계획	○	○	○	개선 이행	100	100	지게차 방호가드 설치 (24. 5월)
	실적	○	○	○				
아차 사고 수집	계획	○	○	○	1건/월	-	-	36건 (월 3건 접수 및 개선)
	실적	○	○	○				
산업안전보건 위원회	계획	○	○	○	1회/분기			분기1회 실시
	실적	○	○	○				
합동안전평가	계획	○	○	○	1회/반기			반기 1회 실시
	실적		○	○				
비상조치훈련	계획	○	○	○	1회/반기 (화재,누출, 대피,구조)	20		반기1회 실시 (5월, 11월)
	실적							
작업허가서 발부	계획	○	○	○	단위 작업별	-	-	-
	실적							

목표/세부계획		추진일정				목표	예산 (만원)	달성률 (%)	실적/부진사유
		1 분기	2 분기	3 분기	4 분기				
작업 전 미팅실시	계획	○	○	○	○	당위 작업별		일일 실시	
	실적	○	○	○	○				
안전보건 예산 집행	계획	○	○	○	○	안전보건 집행	5,000	4,500	정상집행
	실적								
성과측정 및 모니터링	계획		○		○	1회/반기		안전보건확보의무 점검 및 결과보고	
	실적		○		○				
시정조치 이행	계획	○	○	○	○	수시		안전지적사항 45건 개선40건, 진행중 5건	
	실적	○	○	○	○				
경영자 검토	계획		○		○	1회/반기		안전절차 준수 철저히 지시	
	실적		○		○				

#### 4

###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실적 (※실적은 증빙 별도 첨부 필요)

#### □ 연간 교육계획

NO	교육구분			교육 과 정	일 정												대상 인원 (인)	교육 방법 (내·외부)
	안전 보건	공정 안전	수급 업체		1월	2월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		
1	○			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		○		○		○		○		○		10명	집체 (내부)	
2	○			신규 채용 시 안전보건교육						○						발생 시	집체 (내부)	
3	○			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					○							9명	집체 (외부)	
4	○			특별 안전보건교육						○						5명	집체 (내부)	
5	○			비상사태대비 교육 및 훈련					○					○		전직원	집체 (내부)	
6	○			물질안전보건 교육						○						2명	집체 (내부)	
7		○		공정위험성평가 교육											○	10명	집체 (외부)	
8			○	작업내용 변경자 교육						○						발생시	집체 (내부)	

## 5 사용 기계·기구 및 설비의 종류

순번	기계·기구·설비명 (관리번호)	용량	단위 작업 장소	수량	검사대상	점검주 기	발생가능 재해형태
1	(예시)프레스(P-1)	10톤	작업장(1)	2	산업법 안전검사	3개월	끼임
2	(예시)크레인(C-1,2,3)	20톤	외부	3	산업법 안전검사	3개월	부딪힘, 끼임
3							
4							
5							

## 6 유해·위험물질 목록

화학 물질	CAS No	분자식	폭발한계(%)		노기 기준	인화점 (°C)	발 화 점 (°C)	증기압 (20°C, mmHg)	부식성 유무	이상 반응 유무	일일 사용 량	저장 량	비 고
			하한	상한									
(예시) 메틸 알코올	67-56	CH <sub>3</sub> OH	5.5	44	200ppm	9.7	464	127	×	고인화성, 자극성, 부식성, 독성가스	0.2 m <sup>3</sup>	1m <sup>3</sup>	

## 7 작업자 자격·이력·경력현황

작업자 자격·이력·경력

순번	자격	취득일	이 력	실 적	경력 구분
1	산업안전기사(이**)	2019. 10. 1.	2019. 12월 ~ 2020. 8월(○○회사) 2021. 2월 ~ 현재	○○ 현장	경력
2	소방설비(기계)기사 (구**)	2020. 1. 15.	2022. 3월 ~ 현재		신규
3	위험물안전기사 (홍**)	2021. 2. 20.	2023. 3월 ~ 2023. 10월(○○건설) 2024. 2월 ~ 현재	○○ 현장	경력